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(서울창업허브단지 조경공사 포함)[장기1차]]

□ 점검일시 : 2021.11.24 (수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이상현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유리난간 설치예정인 곳은 웨빙띠가 있지만 근로자가 인접하여 작업 시 하단 틈으로 추락 우려가 있으므로 유리난간 설치 전까지는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바람
 -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 비계는 일부 난간 미설치된 곳이 있으므로 조속히 난간 설치하기 바람
 - 썬큰구간 계단실 난간이 일부 미설치 되어 있어 추락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 설치하기 바람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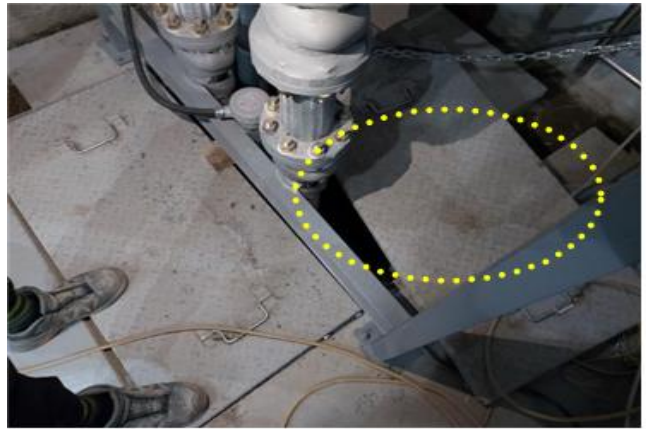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1층 외부 데크 구간은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기둥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외력에 쉽게 전도되고, 기둥간격이 멀어 난간에 휨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완 조치하기 바람

- 1층 외부 데크 구간 난간 옆 틈으로 근로자 추락 우려가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난간 설치 바람

- 지하 집수정 덮개가 미고정 되어 있으므로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지하주차장 입구 벽돌쌓기를 위해 설치한 비계는 전체적으로 출입 통로가 없거나 미흡하여 근로자通行 시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바람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건설기계 안전(건축부)

-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후면에 협착방지봉을 설치하기 바람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2.2 건설기계 안전-001(건설기계)



○ 기계기구 안전(건축부)

- 핸드그라인더는 커버를 설치하여 작업하기 바람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2.3 기계기구안전-002(핸드그라인더)



○ 전도재해 예방(건축부)

- 지하주차장 외부 비계 주변에 굴착 단차로 인하여 전도 우려가 있는 곳은 조치하기 바람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은 폐기물 반출 후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하여 외부인 통제 바람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

